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5일 23시 52분



# 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보조사업의 신고	3

## 보조사업의 신고

2014.04.17 조회수 514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64
담당부서	회계과
상위법령	지방재정법 제17조
조례	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6조
유형	3호 - 신고의무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규제내용	제16조(보조사업의 신고)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1.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될 때 2. 사업을 폐지할 때 3.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할 때 4.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할 때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63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65

# Yeosu Web Contents

